



AMO 협력사 행동규범 Ver 1.0

AMO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안전 수칙과 노동인권 보장 및 윤리규범 준수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MO그룹은 협력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하며, 본 규범을 통해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MO그룹의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AMO그룹과 협력사 모두(이하 "회사")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실시할 때는 언제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정하고 윤리적인 기업운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규범은 EICC행동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1. 노동인권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하여야 합니다.

1.1 차별금지

회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기회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연령, 장애, 민족, 성별, 결혼여부, 임신, 국적, 정치성향, 인종, 종교, 성적 성향, 노조 가입 또는 국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태 등을 근거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거나 작업장 안전성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테스트나 의료 검진을 요구하지 않으며, 검진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1.2 인도적 대우 및 가혹 행위 금지

회사는 작업장의 가혹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폭력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위협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1.3 강제근로 금지와 인신매매 방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숙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강제 노동, 노예 노동, 수형자 노동,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보관하지 않으며 양도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주 또는 대리인(채용대행사)은 근로자에게 수수료(예: 취업알선 등)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그러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전달해야 하며, 작업장 내 이동이나 회사 시설 출입에 대해 부당한 제약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1.4 미성년자 노동 금지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적어도 15세, 해당 법정 최소 고용 연령 또는 의무 교육 완료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1.5 청소년 근로자 보호

회사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초과근무나 야간작업 및 위험한 업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6 작업 및 생활조건

회사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과 음용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 취사 및 보관 시설은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또는 제 3 자가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며, 그 생활 공간 역시 크기가 충분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시간 준수

주당 근로시간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8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지급기준 및 항목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조치의 수단으로 임금삭감(감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9 노동3권 보장

AMO그룹은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합니다

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회사는 제품 생산 등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1 안전보건 정보 공개 및 교육

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모국어로 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2.2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공정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제 관련 우려사항을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 비상사태 대비

회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훈련과 대응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4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회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5 유해인자 노출 저감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비롯,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6 근골격계 질환 예방

회사는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장시간 서 있는 작업을 포함하여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7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장치, 안전센서 및 방호커버 등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8 위생시설 제공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며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환경보호

AMO그룹은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환경 책임을 기업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1 환경 인허가

회사는 기업 운영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관련 허가서 및 규정의 보고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3.2 제품내 규제 물질 준수

회사는 제조하여 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규제물질에 관한 현지법률 및 고객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3 대기 관리

회사는 대기 유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식별하고, 관리 및 저감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제어하며 오염방지 설비의 처리효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3.4 폐수 관리

회사는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의 식별,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하고, 폐수 배출 방지시설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3.5 우수 관리

회사는 우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이행하고, 불법배출과 오폐수가 우수관로 등 공공 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3.6 폐기물 관리

회사는 폐기물을 종류와 성상에 따라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저감 및 폐기/재활용 하여야 합니다.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른 폐기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7 경계 소음 관리

회사는 사업장 소음을 구분, 제어 및 모니터링 하여 경계 소음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8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회사는 보존 및 대체 수단을 이행하여 에너지, 수자원, 천연 자원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배출량을 산정/기록해야 하며, 동시에 저감 및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유해 물질의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 윤리경영

AMO그룹은 기업의 윤리 강령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업무, 조달 및 작업 등 모든 기업적 요소 측면에서 항상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4.1 투명경영

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나 관련 국제부패방지협약을 포함해 사업 시행 국가에서 적용되는 모든 부패 방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2 책임 있는 광물 조달

AMO그룹은 공급망 내에서 관련된 분쟁광물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가별 법규와 국제 규정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하며,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추적하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3 정보 공개

회사는 사업활동, 노동, 보건 안전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위조 또는 허위조작 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4.4 지적 재산권 보호

회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이나 노하우 역시 지적 재산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5 기업 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와 익명 불만 신고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호하고 보복을 금지하는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6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7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회 및 경제적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4.8 C-TPAT

회사는 제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www.cbp.gov) 또는 동일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설립한 기타 웹 사이트의 C-TPAT(대테러 민관 협력 프로그램)보안 절차를 준수합니다.

5. 경영 시스템

회사는 본 규범뿐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 및 노동관행, 안전보건, 환경, 윤리를 기업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정기적인 측정 및 성과평가, 그리고 지속적 개선 수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1 준수 의지 표명

회사는 기업의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윤리강령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한다는 공약의 기업 성명서를 전 작업장에 현지 언어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5.2 경영진 책임과 의무

회사는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이행과 주기적 검토를 담당할 책임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경영시스템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5.3 리스크관리

회사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각 위험군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식별된 위험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합니다.

5.4 교육 및 의사소통

회사는 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하여 올바른 정책 및 절차 이행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과, 업무, 정책 및 기대 목표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 이하 협력업체(들) 및 고객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5.5 감사 및 평가

AMO그룹은 자사의 작업장 및 작업을 포함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까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본 수칙과 법률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5.6 문서와 기록

회사는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와 기록물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개정이력

Ver.	시행일	내용
1.0	2017.9.1	초본 발간

본 수칙은 EICC 전자산업 행동수칙, 윤리적 상거래 계획(ETI),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 노동표준, 국제사회책임기구(SAI), SA8000, ILO보건안전 업무수칙, 미국소방협회, OECD다국적기업지침, OHSAS18001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참조하였습니다.

본 수칙은 제3자의 새로운 또는 추가 권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도는 없습니다.

AMO협력사행동규범